

의안번호	2216894
의 퇴 인	엄태영의원
회 답 일	2026.7.13.
추계번호	26D0930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지원위원회·실무위원회를 설치하고, 각종 계획 수립 및 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 39억 800만원 등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 동안 총 192억 600만원(연평균 38억 4,1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8~2032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8	2029	2030	2031	2032	합계	연평균
지원위원회·실무위원회· 실무지원단 설치·운영 (안 제10조)	145	147	149	151	153	745	149
감사위원회 및 감사위원회 사무기구 설치·운영 (안 제25조 등)	3,466	3,537	3,609	3,683	3,759	18,057	3,611
각종 계획 수립 (안 제33조 등)	288	—	—	72	—	360	72
위원회 설치·운영 (안 제35조 등)	8.7	8.7	8.7	8.7	8.7	43.5	8.7
합 계	3,908	3,693	3,767	3,915	3,921	19,206	3,841

- 주 1. 본 추계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2. 단수 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7조(충북자치도에 대한 특별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상·재정상의 특별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각종 시책사업 시행 시 충청북특별자치도(이하 “충북자치도”라 함)를 우선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 1) 「주민투표법」 제9조(주민투표의 실시요건) ① (생략)
② 18세 이상 주민 중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주민투표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주민투표청구권자”라 한다)은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	안 제10조(충북 자치도 지원위원 회의 설치 등)	-국무총리 소속으로 충북자치도 지원위원회를 둠(위원장 1명 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검토하고 지원위원회에서 위 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둠(위원장 1명 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의무규정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 을 설치할 수 있음	재량규정
3	안 제13조(주민 투표에 관한 특 례)	-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 ¹⁾ 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3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 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음	재량규정
4	안 제16조(특례 부여 및 지원)	-충북자치도의 시장·군수는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해당 시· 군에 대한 특례 부여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부 여할 수 있음 -충북자치도는 특례를 부여받은 시·군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 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5	안 제21조(균형 발전기금 설치· 운용)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 ²⁾ 에도 불구하 고 이 법에 따라 균형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함 -균형발전기금의 재원 및 용도 그 밖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도조 례로 정함	의무규정
6	안 제25조 ~안 제27조(감사 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도지사 소속으로 감사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 명 이내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함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 활동을 지원하고 감사위원회에 관한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둠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무기구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함	의무규정
7	안 제33조(종합 계획 수립)	-도지사는 충북자치도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지역 조성 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함	의무규정
8	안 제35조(국가균 형발전 혁신성장 거점지역 종합계 획 심의회)	-충북자치도에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지역 종합계획 심 의회를 둠 -종합계획 심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의무규정
9	안 제40조, 안 제41조(개발 부담금 감면에 관 한 특례 등)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으로서 시행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은 개발사업에 대해 서는 같은 법 제6조(납부 의무자) 및 제7조(부과 제외 및 감면) 에도 불구하고 개발부담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음 -충북자치도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 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그 지방자
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③~⑥ (생략)

10	안 제46조, ~안 제49조(호수 진흥지구 지정 등)	-도지사는 관광자원 등이 우수한 호수 주변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요건을 갖춘 지역을 호수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지정목적 및 개발방향, 주요 기반시설 설치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한 호수진흥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충북자치도에 포함된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소하천 등에 하천유지유량 등 수량 확보에 필요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할 경우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우선적으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11	안 제53조 ~안 제55조(산림 이용진흥지구 지 정 등)	-도지사는 산림이용 진흥 및 산지난개발을 최소화 등을 위하여 요건을 갖춘 지역을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지정목적 및 개발방향, 주요 기반시설 설치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한 산림이용진흥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재량규정
12	안 제57조 ~안 제59조, 안 제61조 ~안 제65조(중원 역사문화권 지원 에 관한 특례 등)	-국가는 충북자치도 관할구역 내의 「지역문화진흥법」 제9조에 따라 선정된 문화환경 취약지역의 문화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보조사업으로 지원함	의무규정
		-도지사는 중원역사문화권에 관한 계승 및 발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국가유산청장은 도지사와 공동으로 중원역사문화권의 정체성 확립,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등을 위한 공동연구를 실시할 수 있고, 국가유산청장은 공동연구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역사문화권 보존, 정비의 지원 및 기반조성 구축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 -국가유산청장은 충북자치도 산성의 발굴과 보전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국가는 충북자치도에서 학술조사 또는 공공목적 등에 필요한 매장유산 유존지역을 발굴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진흥법」 제47조의8제2항에 따른 스마트관광산업육성을 위한 사업을 충북자치도에 우선 추진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국가는 문화지구관리계획 및 문화지구조성계획에 따라 설치 또는 운영이 필요한 문화시설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보조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음 -국가는 충북자치도의 야간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야간관광산업 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 야간관광산업 개발 및 홍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13	안 제66조(국제회의산업 육성 특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충북자치도 시·군을 국제회의도시로 지정·고시할 수 있으며, 국가는 충북자치도 국제회의도시의 국제회의 유치·개최, 국제회의시설의 건립·운영 촉진 등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14	안 제71조(친환경농업 집적지구 활성화에 관한 특례)	-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친환경농업 집적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정된 친환경농업 집적지구에 친환경농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15	안 제72조, ~안 제75조, 안 제77조(귀농어업인 초기 지원에 관한 특례 등)	-도지사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기 지원기간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으며,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간 내에 충북자치도로 이전하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귀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필요한 기반시설 등의 설치, 농어업 기술지도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 -국가와 충북자치도는 충북자치도 내 청년·중장년 등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정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자리 알선 등 정보제공 사업, 창업 컨설팅 지원 사업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음 -교육부장관, 도지사 및 도교육감은 농어촌유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교육부장관, 도지사 및 도교육감, 시장·군수는 각급 학교의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도지사는 영유아 및 아동, 장애인, 노인 등의 돌봄을 위한 충북자치도 미래돌봄특구를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는 미래돌봄특구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음 -도지사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내 농촌관광자원 등이 우수한 지역은 관광산업을 우선적으로 육성하여 인구감소지역의 활력을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는 인구감소지역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16	안 제76조(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례)	-도지사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충북자치도 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의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국가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기금의 설치 제한) ①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이 되는 기금을 설치하려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금 신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기금 설치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7	안 제80조, 안 제81조, 안 제82조, 안 제85조, 안 제86조, 안 제87조, 안 제88조, 안 제89조, 안 제91조, 안 제93조, 안 제94조, 안 제95조, 안 제97조, 안 제98조, 안 제99조, 안 제100조, 안 제101조 (충북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관리 등)	-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인 충북첨단과학기술단지(이하 “과학기술단지”라 한다)를 조성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부장관은 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충북첨단과학기술단지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할 수 있음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하여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화단지 조성·운영 비용 우선 지원, 특화단지 입주기관 지원, 부담금 감면 특례 등이 적용 -도지사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기능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국가는 개발계획 실행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 -도지사는 5년마다 소재·부품·장비산업 복합단지 진흥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지역특화 소재·부품·장비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자의 전문성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전문교육연수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연수기관 내 부설기관으로 지역 특화 소재·부품·장비산업 분야 연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국가와 충북자치도는 복합단지에 입주한 연구개발기관 및 전문인력양성기관 등에 숙소, 편의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국가 또는 충북자치도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산업·기술 창업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 -국가 또는 충북자치도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에 따라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창업기업에 대하여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0년 동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등의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음 -국가와 충북자치도는 서비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수립, 서비스산업 활성화 실태조사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 -국가와 충북자치도는 바이오헬스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바이오헬스산업의 인프라 조성 등의 지원, 바이오헬스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연구 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	---	---	------

③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국가는 충북자치도에 반도체 및 방산클러스터와 연계한 신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반도체산업·방위산업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 신산업 기술 융합 등을 지원 할 수 있음 -국가는 충북자치도 관할구역에 설치한 연구소 등을 양자과학 기술 연구센터로 우선 지정할 수 있으며,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시범운용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버티포트개발사업 시행의 허가·변경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국가는 이에 따른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국가는 충북자치도의 지능정보화 선도산업 거점지구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국가는 충북자치도의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도지사는 창업 생태계활성화 및 지역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창업 집적 시범지구를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지사가 지정한 창업 집적 시범지구 내 기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도지사는 연구개발, 산업기술 발전, 인재 양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계와 대학 간의 산학협력 선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국가는 지정된 산학협력 선도지구의 조성·운영과 관련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18	안 제104조, 안 제105조, 안 제113조, 안 제116조, 안 제119조, (인접 자치단체간 간선 대중교통에 관한 지원 등)	-도지사가 국가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충북자치도 관할구역 내에 교통물류거점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에 따른 교통물류거점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의무규정
		-국가와 충북자치도는 대중교통에 취약한 주민의 교통편의 등을 위하여 해당 지역에 적합한 교통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음 -국가는 수자원 및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지역개발이 제한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 -도지사는 효과적인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수집, 처리, 분석 및 제공 등을 수행하기 위한 스마트응급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으며, 국가는 충북자치도 스마트 응급의료 서비스 구축을 위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음 -국가는 충북자치도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노인복지시설 등 복지 및 편의 시설 등의 설치를 우선 지원할 수 있으며, 국가는 충북자치도의 사회재난·재해와 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와 이용을 우선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19	안 제124조, 안 제125조, 안 제127조, 안 제129조, (지역 에너지 전환의 지원에 관한 특례 등)	-도지사가 자연경관영향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이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검토·심의를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충북자치도에 자연경관심의위원회를 둔	의무규정
		-도지사는 충북자치도의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충북자치도의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등 에너지 전환을 우선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도지사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으며, 국가는 지정된 신·재생에너지 집적화 단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도지사가 수소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수소특화단지로 우선 지정할 수 있으며, 국가는 지정된 수소특화단지의 기반 조성,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7조(충북자치도에 대한 특별 지원)	×	○선언적·권고적인 성격의 규정으로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함
2	안 제10조(충북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	
3	안 제13조(주민투표에 관한 특례)	×	○현행법은 주민투표에 대하여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을 실시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충청북도 주민투표 조례」는 이와 관련하여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을 주민투표 실시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에 의해 주민투표 실시요건이 완화되어 주민투표 실시횟수가 증가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에 의하여 정해지고, 조례의 개정여부, 구체적인 개정 내용, 이에 따른 주민투표 실시횟수 증가분 등을 현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함

4	안 제16조(특례부여 및 지원)	×	○ 특례가 적용될 시·군과 해당 시·군에 부여될 특례의 내용을 예측하기 곤란하여 소요비용 추계가 곤란함
5	안 제21조(균형발전 기금 설치·운용)	×	○ 기금의 재원 및 용도를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여부, 출연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
6	안 제25조 ~안 제27조(감사위원회 설치 및 직무 등)	○	
7	안 제33조(종합계획 수립)	○	
8	안 제35조(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지역 종합계획 심의회)	○	
9	안 제40조, 안 제41조(개발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등)	×	○ 제정안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개발 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으로서 시행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은 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제정안 시행 이후 개발부담금 납부가 면제될 개발사업을 현 시점에서 추정하기 곤란함
10	안 제46조, ~안 제49조(호수진흥지구 지정 등)	×	○ 제정안에 따른 “충북자치도에 포함된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소하천 등에 하천유지유량 등 수량 확보에 필요한 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예측이 곤란하며, 해당 사업의 규모와 비용 지원 범위를 추정하기 곤란함
11	안 제53조 ~안 제55조(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등)	×	○ 제정안에 따라 산림이용진흥지구 개발계획에 포함될 지원 사항, 보상계획 등을 현 시점에서 예측하기 곤란함
12	안 제57조 ~안 제59조, 안 제61조 ~안 제65조(중원역사문화권 지원에 관한 특례 등)	○	(중원역사문화권 발전에 관한 계획 수립)
		×	○ 제정안에 따른 “역사문화권 보존, 정비의 지원 및 기반 조성 구축 사업”, “충북자치도 산성의 발굴과 보전 등에 필요한 지원”, “매장유산 유존지역 발굴 사업” 등에 대한 지원 규모를 현 시점에서 추정하기 곤란함
13	안 제66조(국제회의 산업 육성 특례)	×	○ 제정안에 따라 국제회의도시로 지정될 시·군을 예측하기 어렵고, 국제회의 유치·개최 및 국제회의시설 건립 등에 소요될 비용과 이에 대한 지원 범위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
14	안 제71조(친환경농업 집적지구 활성화에 관한 특례)	×	○ 제정안에서 규정하는 “친환경농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과 이에 대한 지원범위를 현 시점에서 예측하기 곤란함

15	안 제72조, ~안 제75조, 안 제77조(귀농어업 인 초기 지원에 관한 특례 등)	×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제정안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아 현 시점에서 이와 관련된 추가재정소요를 추 계하기 곤란함
16	안 제76조(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 한 특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17	안 제80조, 안 제81조, 안 제82조, 안 제85조, 안 제86조, 안 제87조, 안 제88조, 안 제89조, 안 제91조, 안 제93조, 안 제94조, 안 제95조, 안 제97조, 안 제98조, 안 제99조, 안 제100조, 안 제101조 (충북첨단과학기술단 지의 조성 및 관리 등)	○	(소재·부품·장비산업 복합단지 진흥계획 수립)
		×	○ 제정안은 소재·부품·장비산업, 바이오헬스산업, 반도체 및 방산클러스터 연계 신산업, 양자과학기술 등을 위한 기술개발 및 연구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원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내 용을 정하고 있지 않아 현 시점에서 이와 관련된 추가 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함
18	안 제104조, 안 제105조, 안 제113조, 안 제116조, 안 제119조, (인접 자치단체간 간 선 대중교통에 관한 지원 등)	×	○ 제정안은 교통물류거점 조성 및 운영, 대중교통 취약 지역 주민에 대한 교통서비스 지원, 스마트 응급의료 서비스 구축 지원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아 현 시점에서 이와 관련된 추가재정소요를 추 계하기 곤란함
19	안 제124조, 안 제125조, 안 제127조, 안 제129조, (지역 에너지 전환의 지원에 관한 특례 등)	○	(충북자치도 자연경관심의위원회 운영)
		×	○ 제정안에 따른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는 정책의 내용”, 제정안에 따라 지정될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수 소특화단지 등을 예측하기 어렵고, 추후 지원 규모 등 에 대하여도 현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함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본 추계에서는 추계가 곤란한 사항을 제외하고 충북자치도 지원위원회·실무위원회·실무지원단 설치, 감사위원회 설치, 각종 기본계획 수립 및 위원회 운영 소요비용을 추계함
- (지원위원회·실무위원회) 안 제10조에 따른 충북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함) 및 실무위원회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가정
 -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총 30명이며, 이 중 민간위원은 20명으로 가정
 -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25명이며, 이 중 민간위원은 15명으로 가정
 -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민간위원에게 회의당 30만원의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며, 각각 연 4회 회의를 실시한다고 가정
 - 회의참석수당은 추계기간 동안 변화하지 않는다고 가정
- (실무지원단) 안 제10조제6항에 따라 지원위원회에 실무지원단을 설치한다고 가정하며, 실무지원단의 운영비용은 국무조정실 특별자치시·도지원단의 평균 운영예산을 준용함
 - 세종·제주·강원·전북 4개의 특별자치시·도지원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자치시·도지원단의 2026년 운영예산은 4억 1,100만원³⁾임
 - － 이 중 민간위원 회의참석 및 안전검토수당으로 편성된 1,600만원을 제외한 운영예산은 3억 9,500만원이며, 시·도별 평균 운영예산은 9,875만원임
- (감사위원회) 안 제25조에 따른 감사위원회 및 안 제27조에 따른 감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운영 현황을 참고하여 추계함
 - 감사위원회 운영 경비는 감사위원장 인건비, 감사위원회 회의참석수당, 감사위원회 사무기구 운영경비를 추계
 - 감사위원장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상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를 합산하여 보수액을 추정하고,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공무원임금평균상승률을 적용
 - － 산출된 보수액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공무원 채용 기관부담 요율을 적용하여 기관부담금 추계

3) 행정실무원 임금, 직책수행경비, 일반수용비, 연구용역비 등(자료: 국무조정실 2026년 예산 각목명세서)

- 감사위원회 위원은 총 7명이며, 이 중 민간위원은 4명으로 가정
 - － 감사위원회 회의는 월 1회 실시⁴⁾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위원회 민간위원에게 회의당 30만원의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며, 회의참석수당은 추계기간 동안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
 - 제정안은 감사위원회 사무기구에 대하여 조직·직무·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조직규모, 인원 등을 예측하기 어려우나, 유사한 지위를 갖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감사위원회 사무국을 설치·운영 중이므로, 제정안에 따른 감사위원회 사무기구 운영비를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사무국 2025년 운영 예산규모를 참조하여 추계함
 - 조직 신설 및 인원 확대에 수반될 수 있는 기본경비, 자산취득비는 감사위원회 사무기구 운영비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본 추계에서 제외하며, 업무공간은 도 청사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가정
- (기본계획 수립) 안 제33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지역 조성 종합계획, 안 제57조에 따른 중원역사문화권 계승 및 발전에 관한 계획, 안 제76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 안 제85조에 따른 지역특화 소재·부품·장비산업 복합단지 진흥계획 수립 비용은 충청북도의 기본계획 수립 관련 연구용역비를 참고하여 추계함
- 「충청북도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2021)」 연구용역비 80백만원, 「충청북도 빛공해방지계획 수립 연구용역(2024)」 연구용역비 67백만원, 「충청북도 철도산업 육성계획 수립(2024)」 연구용역비 52백만원의 평균액 66백만원을 2024년 금액으로 보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되, 추계기간 동안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
 - 계획별 수립주기는 다음과 같이 가정
 - －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지역 조성 종합계획: 5년
 - － 중원역사문화권 계승 및 발전에 관한 계획: 5년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 3년⁵⁾

4)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감사위원회 회의) ①생략
 ②회의는 매월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적위원 과반수의 요구 또는 감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③~⑤ (생략)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수립하는 시장·상점가 활성화

- 지역특화 소재·부품·장비산업 복합단지 진흥계획: 5년(개정안 근거)
- 위 수립주기에 따라 ①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지역 조성 종합계획, ② 중원역사문화권 계승 및 발전에 관한 계획과 ③지역특화 소재·부품·장비산업 복합단지 진흥계획은 추계 첫해인 2028년에 수립, ④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은 2028년과 2031년에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
- (위원회 설치·운영) 안 제35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지역 종합계획 심의회(이하 “종합계획심의회”라 함) 및 안 제129조에 따른 자연경관심의위원회 관련 회의참석수당을 추계하고, 추계기간 동안 수당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안 제35조의 종합계획심의회는 연간 1회, 자연경관심의위원회는 연간 2회 개최되는 것으로 가정
 - 종합계획심의회 의원 수를 전체 위원 23명 중 15명으로 가정
 - 자연경관심의위원회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⁶⁾」을 참고하여 전체 위원 수를 15명으로 하되, 각 회의별로 10명으로 구성되고 이 중 민간위원 수는 7명으로 가정
 - 민간위원에게 회의당 30만원의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며, 추계기간 동안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
-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공무원 신규채용 기관부담 요율,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⁷⁾을 적용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8년부터 2032년까지로 함

기본계획 수립주기 3년을 참고하여 가정함

- 6)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⑤ (생략)

제22조(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⑥ (생략)

- 7)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기관부담요율, 소비자물가상승률(2026.3.)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3.0	3.5	3.0	3.0	3.0	3.0	3.0	3.0
공무원 채용 기관부담 요율(%)	13.004	13.067	13.129	13.193	13.285	13.379	13.475	13.559
소비자물가상승률(%)	2.1	2.3	2.0	2.0	2.0	2.0	2.0	2.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지원위원회·실무위원회·실무지원단의 설치(안 제10조)

- (지원위원회·실무위원회) 추계의 전제에 따라 지원위원회의 경우 민간위원 20명, 실무위원회의 경우 민간위원 15명에 대하여 연 4회 회의를 하고 회당 30만원의 수당을 지급

[표 2] 지원위원회·실무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추가재정소요: 2028~2032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8	2029	2030	2031	2032	합계
지원위원회 (20명×연 4회)	24	24	24	24	24	120
실무위원회 (15명×연 4회)	18	18	18	18	18	90
합계	42	42	42	42	42	21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실무지원단) 추계의 전제에 따라 세종·제주·강원·전북 4개의 특별자치시·도지원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자치시·도지원단 2026년 예산 중 회의참석 및 안전검토수당을 제외한 평균 운영 예산 9,875만원을 준용하고,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
- 추계 결과, 안 제10조에 따라 지원위원회, 실무위원회, 실무지원단을 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 1억 4,500만원 등 2028년부터 2032년까지 총 7억 4,500만원으로 추계됨

[표 3] 지원위원회·실무위원회·실무지원단의 설치·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8~2032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8	2029	2030	2031	2032	합계
지원위원회 민간위원 수당	24	24	24	24	24	120
실무위원회 민간위원 수당	18	18	18	18	18	90
실무지원단 운영비	103	105	107	109	111	535
합 계	145	147	149	151	153	745

주: 단수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감사위원회 및 감사위원회 사무기구 설치(안 제25조 및 안 제27조)

□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감사위원장 인건비와 감사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수당을 추계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2]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표” 상 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위원장 연봉액 121,337천원을 적용
- 수당은 직급보조비와 정액급식비를 추계
 -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상 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는 연간 7,800천원으로 추정⁸⁾됨
 -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에 근거하여 월 16만원의 정액급식비 지급

[표 4] 감사위원장 임명에 따른 보수: 2026년

(단위: 천원)

구 분		감사위원회 위원장
보수	연봉	121,337
	수당	9,720
	합계	131,057

자료: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감사위원장 인건비) 감사위원장 임명에 따른 보수 및 기관부담금 추가제 정소요는 2028년 1억 5,700만원 등 5년간 8억 3,700만원으로 예상됨

[표 5] 감사위원장 임명에 따른 보수 및 기관부담금 추계: 2028~2032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8	2029	2030	2031	2032	합계
보수	139	143	148	152	156	738
기관부담금	18	19	20	20	21	99
합계	157	162	167	172	178	837

주: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8)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2]에 기재된 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위원장 연봉 121,337천원은 부시장·부군수 등의 계급이 3급에 해당하는 시·군·자치구의 시·군·구청장 연봉액과 동일한 금액이므로, 이를 참고하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14]의 부단체장이 3급(상당)인 시·군·구의 단체장에 지급되는 직급보조비를 적용

- (감사위원회 회의참석수당) 감사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 1,440만원 등 5년간 7,200만원으로 추계됨
 - 추계의 전제에 따라 감사위원회 위원은 총 7명이며, 이 중 민간위원은 4명으로 가정
 - 감사위원회 회의는 월 1회 실시하고, 위원회 민간위원에게 회의당 30만원의 회의참석수당을 지급
 - 회의참석수당은 추계기간 동안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

[표 6] 감사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추가재정소요: 2028~2032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8	2029	2030	2031	2032	합계
연간 수당지급횟수 (a, 4명×12회)	48	48	48	48	48	240
회의참석수당(b)	0.3	0.3	0.3	0.3	0.3	-
계(a×b)	14.4	14.4	14.4	14.4	14.4	7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감사위원회 사무기구) 안 제27조에 따른 감사위원회 사무기구 운영 관련 추가재정소요는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사무국 운영 경비를 준용하고,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
 - 전북특별자치도는 감사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⁹⁾」,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¹⁰⁾」,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¹¹⁾」에 근거하여 사무국을 설치·운영 중임

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9조(감사위원회 사무기구) ①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 활동을 지원하고 감사위원회에 관한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두되, 사무기구의 직원은 감사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직원은 지방공무원 및 특정직 국가공무원(소방공무원인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사무기구의 조직, 직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10)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사무국의 조직 및 직무 등) 사무국의 조직과 정원 및 직무 등에 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 따른다.

11)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80조(사무기구) ① 감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둔다.

②~③ (생략)

[표 7]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사무국 운영 현황: 2025년

구분	인력 현황(명)	운영 경비(백만원)	비고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사무국	38 (사무국장 1명, 5급 7명, 6급 24명, 7급 6명)	3,096	사무국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합계

자료: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사무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추계 결과, 제정안에 따라 충북자치도 감사위원회 사무기구를 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 32억 9,500만원 등 5년간 171억 4,800만원으로 추계됨

[표 8] 감사위원회 사무기구 설치·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8~2032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8	2029	2030	2031	2032	합계
감사위원회 사무기구	3,295	3,361	3,428	3,497	3,567	17,148

주: 단수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추계 결과, 제정안에 따라 감사위원회와 감사위원회 사무기구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 34억 6,600만원 등 2028년부터 2032년까지 총 180억 5,700만원으로 추계됨

[표 9] 감사위원회 및 감사위원회 사무기구 설치·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8~2032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8	2029	2030	2031	2032	합계
감사위원장 인건비	157	162	167	172	178	837
감사위원회 회의참석수당	14.4	14.4	14.4	14.4	14.4	72
감사위원회 사무기구 운영	3,295	3,361	3,428	3,497	3,567	17,148
합 계	3,466	3,537	3,609	3,683	3,759	18,057

주: 단수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각종 계획 수립(안 제33조, 안 제57조, 안 제76조 및 안 제85조)

- 추계의 전제에 따라 각종 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충청북도 기본 계획 수립 관련 연구용역비 평균금액을 적용함
 - 연구용역비 평균금액 6,600만원을 2024년 금액으로 보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2028년 7,200만원을 기본계획 수립 비용으로 가정
 - 추계의 전제에 따라 ①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지역 조성 종합계획, ②중원역사문화권 계승 및 발전에 관한 계획과 ③지역특화 소재·부품·장비산업 복합단지 진흥계획은 추계기간 중 2028년에 1회 수립, ④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은 2028년과 2031년에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
- 제정안에 따라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지역 조성 종합계획 등 4개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에 2억 8,800만원 등 5년간 3억 6,0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0] 각종 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8~2032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8	2029	2030	2031	2032	합계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지역 조성 종합계획(안 제33조)	72	-	-	-	-	72
중원역사문화권 계승 및 발전 계획(안 제57조)	72	-	-	-	-	72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안 제76조)	72	-	-	72	-	144
지역특화 소재·부품·장비 산업 복합단지 진흥계획(안 제85조)	72	-	-	-	-	72
합 계	288	-	-	72	-	36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라. 위원회 설치·운영(안 제35조 및 안 제129조)

- 추계의 전제에 따라 종합계획심의회의 민간위원 수는 15명, 자연경관심의 위원회 민간위원 수는 7명으로 하고, 회의참석수당은 30만원으로 추계 기간 동안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함
- 제정안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 870만원 등 5년간 4,350만원으로 추계됨

[표 11] 위원회 설치·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8~2032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8	2029	2030	2031	2032	합계
종합계획심의회의 (15명, 연 1회)	4.5	4.5	4.5	4.5	4.5	22.5
자연경관심의위원회 (7명, 연 2회)	4.2	4.2	4.2	4.2	4.2	21
합계	8.7	8.7	8.7	8.7	8.7	43.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마. 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충북자치도 설치를 위한 지원위원회·실무위원회를 설치하고, 각종 계획 수립 및 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 39억 800만원 등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 동안 총 192억 6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2]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8~2032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8	2029	2030	2031	2032	합계
지원위원회·실무위원회· 실무지원단 설치·운영 (안 제10조)	145	147	149	151	153	745
감사위원회 및 감사위원회 사무기구 설치·운영 (안 제25조 등)	3,466	3,537	3,609	3,683	3,759	18,057
각종 계획 수립 (안 제33조 등)	288	—	—	72	—	360
위원회 설치·운영 (안 제35조 등)	8.7	8.7	8.7	8.7	8.7	43.5
합 계	3,908	3,693	3,767	3,915	3,921	19,206

주: 단수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 결과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전상욱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전상욱	02-6788-4673	flyhigh@assembly.go.kr